

## ■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 이민국의 도착비자 및 비즈니스비자 관련 Policy 동향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도착비자(Visas on Arrival)에 대한 새로운 Policy를 채택하였음을 밝혔는데, 도착비자의 용도는 관광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행 명문법령과 배치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착비자를 소지하고도 관광 외에 사업관련 회의를 주최하거나 참석할 수 있고, 사업에 관련된 활동이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비즈니스 비자(Business Visa; 흔히 '방문비자'라고도 함)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민국 국장은 비록 새로운 Policy가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Policy는 현재 적용 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민국은 최근 비즈니스 비자(Business Visa)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즉, 종래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는 교육, 세미나 등에 교육자, 강사 등 자격이나 역할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변경된 입장에 따르면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는 단수이든 복수이든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는 단기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육자나 강사의 역할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비자에 관한 새로운 실무 태도는 현행 법령에 배치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이민국이 현행 법령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봄이 좀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였다가 교육 또는 훈련을 제공한 방문자를 구류하였고, 해당 방문자의 비자 후원자(Sponsor)에게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목적의 대규모 세미나 등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강사나 연설자로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경제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장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근로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또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교육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민국의 도착비자 및 비즈니스 비자에 관한 최근의 엄격한 태도는 재고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이민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나 항구가 어디냐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입장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착비자를 활용할 외국인도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는 입국 심사 시에 방문 목적에 대해 편의상 또는 별 다른 고민 없이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외국인의 광산지분 처분방법에 관한 법령 공포

2012년 3월 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Mine) 지분을 종래 100~80%(생산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 후 80%)까지 허용하던 것을 생산개시로부터 10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광산지분의 49%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업계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개정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 상위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이 위 개정법령에 따라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위 법령은 대략적인 틀만 제공할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언제쯤 하위 법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업계 관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종래 2010년 정부령 제 23호(GR 23)상 지분 처분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세부 이행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2010년 정부령 제23호는 외국인이 생산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광산지분의 20%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 그동안 이행법령이 제정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지분 처분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2012년 정부령 제24호(GR 24)에 따른 외국인 지분처분의 방법도 이번 에너지광물자원부 법령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처분 대상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어야 하고, 주식시장에 공개된 외국인 보유주식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일정 요소를 고려하여 최초 주식매도가격을 결정하고, 만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의무매도 대상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국영기업 및 사기업체 순서로 공매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공매절차는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에 의해 지명된 위원회가 주관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및 기업 측이 의무주식매도절차에 따라 취득한 주식비율은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번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위 법령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나아가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